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11. .

제 안 자 : 행정안전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, 해당 전직 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기부채납하는 자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“후보”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).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5조제1항 중 “기록물의 관리·전시·연구·교육 등”을 “기록물의 관리·전시·연구·교육 등(이하 “관리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안 제25조제2항 중 “개인, 민간단체, 지방자치단체”를 “개인 또는 단체”로 하고, “기록물을 관리하기”를 “기록물의 관리등을”로 한다.

안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안 제25조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개인, 민간단체, 지방자치단체”를 “개인 또는 단체”로 하고, “기록물을 관리하기”를 “기록물의 관리등을”로 한다.

안 제25조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임명을”을 “후보를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5조(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)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.	제25조(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-기록물의 관리·전시·연구·교육 등을----- ----- -----.	제25조(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-기록물의 관리·전시·연구·교육 등(이하 “관리등”이라 한다)을----- ----- -----.
② 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「국유재산법」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	② 개인, 민간단체, 지방자치단체----- ----- ----- -----기록물을 관리하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② 개인 또는 단체----- ----- ----- -----기록물의 관리등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개별대통령기록관
으로 본다.

<신 설>

③ 대통령기록관의
장은 개인 또는 단
체가 국가에 기부
채납 할 목적으로
특정 대통령의 기
록물을 관리하기
위한 시설을 건립
하고자 하는 경우
에는 전문위원회의
심의를 거쳐 필요
한 경비의 일부를
예산의 범위 안에
서 지원할 수 있다.

-.

<신 설>

③ -----
-----개인, 민
간단체, 지방자치단
체-----

-----기록물을
관리하기-----

-----있고 기
술적·행정적 지원
을 할 수 있다.

-----.

③ 지방자치단체는
개별대통령기록관
의 업무 수행을 위
하여 필요한 경우
에는 「공유재산 및
물품 관리법」에도
불구하고 공유재산
을 무상으로 사용
하게 할 수 있다.

④ -----
-----개인 또
는 단체-----

-----기록
물의 관리등을-----

-----있고
기술적·행정적 지
원을 할 수 있다.

④ (생략) ⑤ 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<u>대통령</u>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<u>장</u>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. <신설> <신설>	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<u>대통령</u> 또는 해당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----- -----<u>임명</u>을----- -----. ⑥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·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 ⑦ 그 밖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<u>대통령</u> 또는 해당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----- -----<u>후보</u>를----- -----. ⑦ (개정안 제6항과 같음) ⑧ (개정안 제7항과 같음)
---	---	---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8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김 윤 · 모경중
박해철 · 신정훈 · 윤종균
이광희 · 이상식 · 이재관
장종태 · 정진욱 · 조계원
주철현 · 채현일 · 황정아
박선원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·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·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·운영함.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.

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·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- 가. “관리·전시·연구·교육 등”을 “관리등”으로 약칭하고,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25조제1항·제2항·제4항).
- 나.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기부채납할 수 있는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함(안 제25조제2항).
- 다.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제3항 신설).
- 라. 해당 전직 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기부채납한 자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“후보”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제6항).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 제목 중 “설치 등”을 “설치·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록물을 관리하기”를 “기록물의 관리·전시·연구·교육 등(이하 “관리등”이라 한다)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록물을 관리하기”를 “기록물의 관리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기록물을 관리하기”를 “기록물의 관리등을”로, “있다”를 “있고 기술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대통령은”을 “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”으로, “임명을”을 “후보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⑦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·도서관 및 연구지

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⑧ 그 밖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개별대통령기록관의 <u>설치</u> 등)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<u>기록물을 관리</u> <u>하기</u>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.	제25조(개별대통령기록관의 <u>설치</u> · <u>운영</u>) ① ----- ----- <u>기록물의 관리</u> · <u>전시 · 연구 · 교육</u> 등(이하 “ <u>관리등</u> ”이라 한다)을----- ----- -----.
② 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<u>기록물을 관리하기</u>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「국유 재산법」 제13조에 따라 국가 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 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 령기록관으로 본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기록물의 관리등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③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 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<u>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</u> <u>및 물품 관리법」</u> 에도 불구하 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하게 할 수 있다.
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	④ -----

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-----기록물의 관리등을-----

-----있고 기술적
·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⑥ -----

-----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-----
-----후보를-----
-----.

⑦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·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⑧ 그 밖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